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7학년도 기본계획은 입학전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종 공지되는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NU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Ⅰ. 전형일정 ····· 1

Ⅱ. 모집인원 ····· 1

Ⅲ. 지원자격 ····· 2

Ⅳ. 전형요소별 배점 ····· 4

Ⅴ. 전형요소별 평가 반영방법 ····· 4

Ⅵ. 합격자(후보자 포함) 선발방법 ····· 6

Ⅶ. 기타 ····· 8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Ⅰ. 전형일정

구 분	가군	나군
원 서 접 수	2026. 9. 28.(월) 09:00 ~ 10. 2.(금) 18:00	
1단계 합격자 발표	2026. 11. 6.(금) 예정	
구 술 면 접 고 사	2026. 11. 14.(토) 09:00 예정	2026. 11. 21.(토) 09:00 예정
최 초 합 격 자 발 표	2026. 12. 11.(금) 예정	

※ 위 일정은 입학전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Ⅱ. 모집인원

모집단위	전형유형	모집인원					
		가군		나군		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일반전형	55	결원인원	56	결원인원	111	결원인원
	특별전형	5	결원인원	4	결원인원	9	결원인원
	계	60	결원인원	60	결원인원	120	결원인원

1. 「정원 내 모집인원」은 가군, 나군 합하여 총 120명 임.
2. 「정원 외 모집인원」의 선발은 2026학년도에 발생되는 결원(신입생의 미충원 인원, 재학생의 자퇴 등 제적에 의한 결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2027학년도 입학전형의 후보자 중에서 비법학사 · 타 대학 출신자 · 지역균형인재 선발비율(이하 '쿼터제'라 함)을 적용하여 순번대로 선발함.
   가. 정원 외 선발 인원은 입학정원(120명)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나. 정원 외 인원 선발 배정순위는 결원 발생순서에 따라 그 결원의 해당 전형유형(일반전형, 특별전형)별로 쿼터제를 적용하여 1명씩 가군, 나군 순으로 순차 배정함.
   다. 정원 외 선발 인원이 9명 이상일 경우, 특별전형에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특별전형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라. 2026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 확정일은 시행령 개정 시 2027. 2. 26.(금) 임.
3. 가군, 나군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단, 각 군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
4. 비 법학사 선발비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하여 가군 및 나군의 모집인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을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7. 2. 28. 이전 취득 예정자 포함) 중에서 선발함.

5. 타 대학 출신자 선발비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하여 가군 및 나군의 모집인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을 경북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7. 2. 28.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중에서 선발함.

6.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 선발비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가군 및 나군의 모집 인원 중 각각 15%이상을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7. 2. 28.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중에서 선발하며, 1단계 합격자 선발 시에는 54명(가군 27명, 나군 27명) 이상을 선발함.

7. 복수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원서 접수 시에 본인이 선택한 1개의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하여 위 4.호 ~ 6.호를 적용함.(학사편입 제외)

8. 추가모집[지역균형인재 쿼터]

가. 정시모집의 전형일정상 이중등록자 등록포기 마감 시한(2027. 1. 29. 18:00)을 기준으로 지역균형인재 쿼터에 미달하고 이를 후보자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에 대하여 지역균형인재 추가모집을 실시함

나. 추가모집 실시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추가모집 공고를 실시함

다. 추가모집의 전형요소, 성적반영 방법, 제출서류 등 주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시모집의 경우와 동일함(세부계획 별도 수립 및 공고)

라. 지역균형인재 쿼터를 추가모집으로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시모집 지역균형인재 쿼터 외 후보자로 군별 충원함

Ⅲ. 지원자격

1. **공통사항** : 지원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27. 2. 28.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나 법령에 의해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2026년도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적성시험 (이하 "법학적성시험(LEET)"이라 함)에 응시하여 그 성적을 제출하는 자

2. **일반전형** : 지원자는 공통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2024. 10. 3.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6. 10. 6.)까지 성적을 제출한 자

TOEFL IBT	TOEIC	TEPS
91점 이상	800점 이상	310점 이상

3. **특별전형** : 지원자는 공통사항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24. 10. 3.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6. 10. 6.)까지 성적을 제출한 자

TOEFL IBT	TOEIC	TEPS
75점 이상	655점 이상	247점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 대상

선발유형	지원자격
신체적 배려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원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본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또는 이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가구원
사회적 배려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나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의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 및 의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본인 또는 그 자녀) ▪「아동복지법」에 따른 국내아동복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 된 곳)로 아동복지시설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Ⅳ. 전형요소별 배점

전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배점						합계
		법학적성 시험성적	학사과정 성적	공인영어 성적	서류평가 성적	구술면접 고사성적	논술고사 성적	
1단계	300%	150점	100점	P/F	50점			300점
2단계	100%	1단계 점수의 합(300점)				70점	30점	400점

Ⅴ. 전형요소별 평가 반영방법

1. 법학적성시험 성적

- 법학적성시험 영역 중 논술 영역을 제외한 영역의 성적을 아래 산출공식에 의해 15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

▶ 법학적성시험 성적 산출공식

= 85점 + [65×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에서 획득한 표준점수의 합 / 2개 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최고점수* 합]

* 최고점수 : 당해연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발표한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별 표준점수의 최상위 급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점수

2. 학사과정 성적

- 학사과정 전 학년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를 아래 산출방법에 의해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반영대상 성적은 학위를 취득한 학사과정의 전학년, 전과목 성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성적 반영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학사과정 성적 산출공식 = 65점 + (35점 × 전학년 평점평균 백분위 점수/100)

가. 2027. 2. 28. 이전 졸업예정자는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

나. 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학사학위의 성적만을 반영함. 다만 학사 편입하여 취득한 학사학위를 선택한 경우 및 약학대학의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된 이후 입학한 약학대학 졸업(예정)자, 학점은행제(학사 타전공)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전적 대학 성적도 반영함. 다음의 산출 공식에 의거 반영함.

학사과정 반영점수 = {(A대학 이수학점 수 × A대학 산출성적) + (B대학 이수학점 수 × B대학 산출성적)}
/(A대학 이수학점 수 + B대학 이수학점 수)

다. 학사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학과 출신자의 성적은 예과와 본과 성적 모두를 반영함. 다음의 산출 공식에 의거 반영함.

학사과정 반영점수 = {(예과 이수학점 수 × 예과 산출성적) + (본과 이수학점 수 × 본과 산출성적)} /(예과 이수학점 수 + 본과 이수학점 수)

라. 성적증명서에 성적평균이 100점 만점 점수로 평가되었을 경우 성적평균을 그대로 적용

마. 성적증명서에 성적평균이 100점 만점 점수와 평점의 2가지 방법으로 병기 되었을 경우 100점 만점 점수를 우선 적용

바. 백분위 점수가 없는 경우 또는 성적특이자(외국대학 등)에 대해서는 본교가 정하는 산출 방법에 의해 평가함

3. 공인영어 성적

가. 2024. 10. 3. 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2.)까지 취득한 공인영어 성적 중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26. 10. 6.)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함.

나. 인정하는 공인영어의 종류 : TOEFL IBT, TOEIC, TEPS

다.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은 다음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통과(Pass)이고 미만이면 실격(Fail)으로 판정

1) 일반전형

TOEFL IBT	TOEIC	TEPS
91점 이상	800점 이상	310점 이상

2) 특별전형

TOEFL IBT	TOEIC	TEPS
75점 이상	655점 이상	247점 이상

4. 서류평가

가.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기타 각종 증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함.

나. 교육과정 성취도, 법조인 소양, 법학적성 및 발전가능성, 사회활동 경력 및 봉사활동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함.

다. 자기소개서에는 부모 또는 친인척의 성명, 직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음.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광의적 직종명(사업, 회사원, 교육자 등)도 기재할 수 없음

2)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금지 사항 위반 시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함

- 기재금지사항 위반 시 불이익 내용(예시) -

구분	기재 예시	불이익(제재)내용
실명 등 특정가능 정보 기재 시	- 부모, 친인척의 실명 기재 -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실격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실격
광의적 직종명 기재 *	-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 할아버지부터 ○○업에 종사하여 -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감점

*** 광의적 직종명 기재 :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격 처리함.

라. 자기소개서에 본교 교수 실명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기재된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시 실격 또는 감점 처리함

마.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현재 직장명, 출신학교, 관련학교(교환·교류학생) 및 현재 재학중인 학교(법학전문대학원 포함)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할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점처리할 수 있음

5. 구술면접고사

가. 법률가로서의 자질 및 법학수학능력을 구술에 의한 심층면접의 방식으로 평가함.

나. 분석력, 논리력, 종합력, 표현력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함.

다. 면접위원에게는 원서, 자기소개서 등 전형요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면접위원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킴.

6. 논술고사

가.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논리적 · 분석적 · 종합적 · 체계적 사고능력 및 표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고사를 실시함.

나. 논술고사의 답안은 법학적성시험의 논술답안으로 대체함.

Ⅵ. 합격자(후보자 포함) 선발방법

1. 모집군별 · 전형유형별 · 사정단계별로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함.

2.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비법학사, 타대학출신자, 지역균형인재 선발 시 모집군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을 합산하여 다음의 선발비율을 적용함.

구분	선발비율	기준
비법학사	전체 모집인원의 1/3이상	-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타대학 출신자	전체 모집인원의 1/3이상	- 경북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 학사편입에 관하여는 **최초 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함. - 독학사 등 학위인정과정을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타대학 출신자로 인정함.
지역균형 인재	전체 모집인원의 15%이상	-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 - 학사편입에 관하여는 **최초 졸업**한 대학을 기준으로 함. - 본교가 대구·경북 지역에 있고 캠퍼스가 타지역에 있는 경우, 타지역 캠퍼스 졸업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 선발비율 및 인원은「정원 외 모집인원」의 선발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복수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원서접수 시에 본인이 선택한 1개의 학사학위를 기준으로 하여 위 사항을 적용함.(학사편입 제외)

나. 위 선발비율은 최종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선발 시 적용하며, 한 명의 합격자가 두 개 이상의 선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선발 유형에 합격한 것으로 처리함.

다.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지역균형인재는 54명(가군 27명, 나군 27명) 이상을 선발함.

3. 특별전형 최종 합격자 선발 시,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하여 가·나군 합산하여 30% 이상 선발함.

* 경제적 여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전형요소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가. 지원자격 미달자

나. 구비서류 미제출자

다.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격 처리된 자

라.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모두 구술면접고사의 성적이 배점의 60% 미만인 자

마. 일반전형의 경우 논술고사 성적이 배점의 60% 미만인 자(특별전형은 해당없음)

5. 동점자 선발 기준

가. 1단계 : 동점자를 동순위로 하며,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나. 2단계 : 다음의 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여 선발함.

- 1순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 우수자
- 2순위 : 구술면접고사 성적 우수자
- 3순위 : 서류평가 성적 우수자
- 4순위 : 논술고사 성적 우수자

6. 2단계 사정 결과 동일한 지원자가 가·나군에 모두 합격한 경우 또는 충원합격자 선발 시 동일한 지원자가 가· 나군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발함.

가. 합격순위가 높은 군의 합격자로 결정함.

나. 합격순위가 동일한 경우 취득점수 총점이 높은 군의 합격자로 결정함.

다. 취득점수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군의 합격자로 결정함.

7. 위 ‘1.호~6.호’에 의해 선발한 결과, 가군/나군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각각 나군/가군의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함.

8. 후보자는 모집군별 · 전형유형별 2단계 성적 취득점수 총점 순으로 일반전형은 모집인원의 1배수를 선발하며, 특별전형은 모집인원의 2배수를 선발할 수 있음. 다만, 일반전형 중 지역균형인재(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 출신자)는 군별 모집인원의 2배수까지 후보자로 별도 선발할 수 있음. 결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후보자 중에서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가. 결원이 발생한 모집군의 전형유형별 후보자 중에서 선발하며, 지역균형인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균형인재 후보자 중에서 우선 선발함.
   나. 결원이 발생한 모집군의 전형유형별 후보자가 없으면 같은 전형유형(모집군에 관계없이)의 후보자 중에서 선발함.
   다. 결원인원 확정일인 2027. 2. 26.(금)까지 충원합격자를 선발함.
   라. 위 가.~다.의 후보자 중 충원합격자 선발 시에도 위 ‘1.호~3.호’를 적용함.
   마. 결원이 발생한 전형유형에 후보자가 없으면 추가 모집하여 선발할 수 있음.

Ⅶ. 기타

- 이미 본교에 등록한 자가 타교에 충원합격[2027. 1. 29.(금)까지]하여 이동 시, 타교 등록 전 반드시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함.

- 동일 모집군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지원할 수 없으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중 복수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함.